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송두범·한상욱(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다핵형·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표와 비전을 두고 추진해 왔다. 소수의 발전거점보다는 다수의 발전거점을 육성하는 다핵형 균형발전과 각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추구해온 것이다. 동시에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화발전과 상생·연계발전을 도모하여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정책적 이상으로 해왔던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전략 차원으로 확대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지역내의 GRDP 성장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이 지역균형발전의 긍정적 현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¹⁾

이러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판론자들은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부재, 전국의 투기장화, 계획의 미래비전의 불투명,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공급정책,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 정책의 산발적 추진으로 중복과 비효율의 발생을 초래해 왔다²⁾고 지적한다.

결국,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지방에서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한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상호간, 지역내 경제주체간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어 사회적 통합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는 극단의 평가가 공존하고 있

1) 김동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재정, 재정포럼, 제136권, 한국조세연구원, 2007, p.3.

2) 김은경,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경제연구, 제4집 제2호, 2007, p.136.

고, 아직도 상당수의 균형발전사업들이 계획 및 집행단계에 있어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5+2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진하고,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사업인 혁신도시의 재검토논의가 대두되는 등 참여정부에서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의 기초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낙후지역³⁾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하여 낙후지역을 새로운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28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⁴⁾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근간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국토의 불균형을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한 반면 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균형발전정책은 단기간에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초를 살펴보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본 다음 현행 시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법률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4) 법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금년 9. 29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낙후지역 개발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5) 최병선, 새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 과제와 방향, 국토, 국토연구원, 2008.

II.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6) 검토

1. 새정부의 국정운영과 국토정책 기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서 살펴본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기조는 다음과 같다. 새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를 최상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세계 일류국가의 구체적인 모습은 일류의 시민의식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나라로서 대다수 국민이 잘사는 나라, 차가운 시장경제를 녹여줄 따뜻한 사회, 고품격의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 등 세 가지를 요소로 한다.

국가비전의 하위개념인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로 철학이나 원칙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실행 등에 있어서 요구되는 행동규범이며,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발전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와 19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국토정책기조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특별행정기관을 정비하며,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추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선진화한다. 융합신기술, 금융, 의료, 문화·관광산업 및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한편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제

1)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그간 우리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행정구역 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에 따라 지역간 사업중복, 수도권-지방의 대립, 한정된 재원에 따른 소모적 경쟁,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세계적 장소경쟁에 부응하고 생활·생산공간이 광대역화되는 추세에 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설정하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지역간 공동발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행정

6)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 그리고 나눔, 백서 1, 200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구역 초월, 창조적 지역협력’, ‘특성화 발전을 통한 성장’, ‘광역권 신성장동력 구축’, ‘분권과 통합’이라는 4대 기조하에 5+2광역경제권을 추진할 방침이다. 5대 광역경제권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설정하고, 2대 특별광역권으로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광역경제권과의 연계사업 활성화이다. 지역간 협력을 통한 유망주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광역유형(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연계사업), 초광역유형(광역경제권 간 연계사업), 기초유형(광역경제권 내 기초지역 간 연계사업) 등 다양한 연계 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둘째, 규제개혁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다. 광역경제권 투자활성화 여건의 획기적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 등 수요자 중심, 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및 원스톱 행정지원 등을 통해 스피드하고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망 구축이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간 간선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권역 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넷째,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이다. 교통망의 발달, 관광·여가수요의 확대, 청정 및 장수·건강지역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계기로 만성적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국토 신발전지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섯째,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관계를 불식하고 상호 윈-윈의 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간 연계투자 및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섯째,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지역간 협력과 통합적 조정, 실질적 분권화 체제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워질 수 있도록 광역 행·재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활용해 국가경쟁력 특위업무중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국가정책을 논의토록 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운용해 국가차원에서 광역경제권 간 정책기획·조정·모니터링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편과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업무지원을 위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운영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등을 종합·조정해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권역별로 광역경제권 지역본부를 설치·운용해 기존 행정협의회와 조합의 실질적 권한 미흡에 따른 유명무실 문제를 해소하고, 시·도간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본부는 광역경제권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수립, 지역간 정책·사업조정, 국내외 민간투자를 해당 광역경제권으로 신속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한 원스톱 행정구현 역할 등을 하게 될 것이다.

2)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을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비수도권 간에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방의 발전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방안은 지방발전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수도권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방안은 단기적 추진방안과 중장기적 추진방안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단기적인 추진방안으로 현 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공공기관 이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정해 수도권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인천자유경제자유구역,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현재의 권역을 조정해 기업입주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낙후지역내 개발사업 및 대형건축물 규모에 대한 제한 등 실효성이 적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광역경제권 구축 등 지방의 발전기반 조성계획과 병행해 법령에 의한 기준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계획에 의한 탄력적 관리(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관리 주체도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닌 중앙정부와 수도권 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의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고나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사항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08년 중에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기업·낙후지역 관련규제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내 자치단체와 협의해 계획적 관리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광역거버넌스 기구 설치도 추진하고자 한다. 2010년 이후에는 ‘수도권 성장관리계획(가칭)’을 수립하고 수도권 관리체제를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3)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된 2만 8,300ha의 땅과 1만 1,800ha의 담수호를 어떻

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국익, 지역발전, 환경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 확정발표(2007.4)된 토지이용계획을 농지조성 중심에서 ‘경제중심도시’건설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항만·물류, 식품·가공,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국제금융센터, 항공·우주복합과학단지 및 환경단지 등의 조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우선 기존의 내부토지 이용계획상 72%인 농지를 30%로 축소 조정하고 토지용도별 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기간은 2030년 이후에서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10년을 단축하고자 한다. 개발방법도 기존의 순차적 개발방식이 아니라 수질개선을 통해 동진·만경수역 등 동시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완벽한 수질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29개소와 하수관거 2,820km 등을 조속히 설치하고, 왕궁 축산폐수처리 무방류 시스템도 도입해 당초 2011년까지 완료예정이던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2010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위해 전국항만기본계획(2001-2011)에 이를 반영하고 무역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 즉시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 신항은 총26선석 중 1단계로 8선석을 먼저 건설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연계기반시설 건설도 추진한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을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반영하고, 새만금-군산간 철도건설은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2006-2015)에 반영해 조기 착공한다. 또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도 조기에 설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항공수요를 감안해 추후 검토할 과제로 남겨뒀다.

방수제 건설(138km), 방조제 다기능복합·사면부지, 군산산업단지·부안관광단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개발수요가 높은 사업은 조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민간자본 유치 촉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각종 지원시스템과 특례조항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대비해 세계적 첨단연구시설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성격을 가진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국가전략으로서의 과학밸트조성은 과학과 인문학·예술이 융합하는 창조적 연구공간과 세계적 과학두뇌 유치, 유기적인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구체화된다.

창조적 연구공간은 기초과학 및 의료·생명과학 발전의 기반이 될 세계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가칭) 설립으로 구체화한다. 학문분야별로 세계 정

상급 과학자 100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해 연구·기획, 평가에 대한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정상급 연구자를 팀 리더로 선발해 연구그룹 구성,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연구시설은 융합연구의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연구센터, 미래장비센터, 신물질센터, 연구병원 등이 연계 결합될 것이며,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기반시설인 가속기 설치로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위상을 정립할 것이다.

가속기는 중이온 가속기(세계 5대시설)를 검토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무통·무혈암치료 시설로서 방사성 동위원소빔 생산 및 신물질 개발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사광 가속기는 신소재 개발, 재료·화학·의학 등 응용과학과 물성, 원자·분자물리,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세계적 과학두뇌와 다국적 기업의 교류를 촉진하는 과학기술의 지식세계화 축으로서 ‘세계지식교류센터’를 설치해 국제 지식축제·컨퍼런스 및 저개발국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과학·인문사회·문화예술 등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창조적인 지식생산·교류를 지원하는 ‘지식융합센터’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교류·융합할 수 있도록 지식융합 심포지엄 운영 및 과학예술센터·과학박물관 등 문화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한다.

멘토링, 기술평가, 글로벌 마케팅,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쇄빙기업 및 기술발굴·유치·투자로 과학·비즈니스 모델을 단계별로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문화예술 등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으로 외국인을 위한 주택·학교 등 건설, 의료·종합행정 서비스 지원, 영어공용화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2008년 초부터 전담조직 신설, 특별법 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초기에 착수하고, 2012년까지 가속기 시운정이 가능하도록 제반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17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의 기초를 정립한다.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특별법」과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법」 등 2개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초기에 추진하고,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제과학비즈니스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관련부처 등과 이해관계를 조정, 결합하는 조직체계 구성이 요구된다.

3. 새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시사점

참여정부는 국가발전과제중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⁷⁾.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며,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의 분권-분산국가를 지향해 왔다.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2004,p.69.

반면, 새정부에서는 과거의 발전체제를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시도단위 균형발전, 요소투입중심, 국토불균형발전 등으로 규정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 경제권역 단위 광역개발, 사람과 제도혁신 중심,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와 새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규제완화’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자료⁸⁾에서는 단기적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병행하여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내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개선(08.12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 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며 경제자유구역·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 산업단지 물량규제 배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법령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추진(09-)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의에 의한 계획 수립과 현재의 수도권 3개 권역을 정책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책지구 지정 등 규제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⁹⁾ 역시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내 상대적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 개선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즉,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 폐지 및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산업집적활성화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동향을 검토해본 결과 새 정부에서는 참여정부가 견지해온 수도권 규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공간 및 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분석

1. 사례지역의 선정

사례지역으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선정하였다. 충북 및 충남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균형발전지원 대상 시군의 경우 충북은 6개 군, 충남은 8개 시군이며, 지원기간은 충북은 2006-2010년, 충남은 2008-2012년으로 각각 5년간이다.

8) 국토해양부,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경영, 업무보고 자료, 2008.3.24, p.9.

9) 기획재정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 실천계획, 2008.3.10,p.37.

<표 1> 균형발전지원 대상 시군

구분	시군	비고
충북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영동군, 옥천군, 단양군	6개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8개시군

2. 지역균형발전 제도의 비교검토

충북과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와 규칙의 주요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역균형발전 조례 및 규칙내용 비교

구 분	충 북	충 남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균형발전 촉진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골고루 잘사는 도건설
균형발전계획	• 기본계획, 시행계획	• 기본 및 개발계획, 시행계획
불균형실태조사	• 5년마다 불균형실태조사	• 5년마다 발전수준 분석
선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인구고령화, 취업기반, 지방 재정, 지역소득수준, 사회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취업기반, 지방재정, 소득수준, 사회기반시설,
협약체결	• 투자협약제	-
사업평가, 컨설팅	• 연1회 이상, 인센티브 가능	-
재 정	•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균형실태조사결과,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보조비율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협의회 대체 가능 •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 균형발전위원회

3.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범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충청북도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충청북도지사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에서는 조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전담조직

충청북도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국 단위 균형발전본부를 설치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충북개발연구원내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는 기획관실내 지역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3) 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에서는 균형발전 목표, 기본방향, 지역별·권역별 균형발전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는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개발의 기본방향, 개발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충청북도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와 일반회계 등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익금, 차입금(약250억)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낙후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정의 충청남도 배정분의 10%이내 보조금, 지방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5) 위원회

균형발전 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현재는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형발전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균형발전사업비 지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4) 투자협약제 등

충청북도에서는 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세출예산 편성시 불균형실태조사와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보조비율에 차등을 두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는 시군별 발전수준에 대한 차등지원 규정만 두고 있다.

4. 추진실적

1) 충청북도¹⁰⁾

충청북도는 2006-2010년(5개년)기간중 낙후도 분석결과 발전도가 음(-)인 지역을 우선 추진하되 1단계로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영동군, 옥천군, 단양군 등 6개 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1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207억원(도비 150억원, 시군비 57억원) 5년간 1,035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2006-2007년 6개 시군 6개 사업에 대해 235억원(도비 166억, 군비 6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 시군별 전략사업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낙후 그룹	군별	사업명	총 사업비			'06~'07지원액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계			100,650	72,000	28,650	23,520	16,600	6,920
A	괴산	장류식품산업 육성	16,250	13,000	3,250	3,250	2,600	650
	보은	천연자원물 이용 웰빙산업클러스터 구축	16,250	13,000	3,250	3,250	2,600	650
B	증평	체험형 웰빙타운·투어 조성	17,150	12,000	5,150	3,430	2,400	1,030
	영동	고령친화클러스터 조성	17,150	12,000	5,150	3,430	2,400	1,030
C	옥천	의료기기산업 및 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16,925	11,000	5,925	3,390	2,200	1,190
	단양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	16,925	11,000	5,925	6,770	4,400	2,370

또한, 낙후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및 기존 전략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1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49억 원을 계상하여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할 계획이며,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이 신청하였으며, 이중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2개 시군을 선정하여 6억원을 지원하였다.

2) 충청남도

10) 원광희, 균형발전정책 추진동향과 효율적 추진, 2008에서 정리.

충청남도는 2007년 5월 10일 시군별 발전수준 분석을 통하여 8개 시군을 균형 발전 지원대상 시군으로 선정하고, 시군별 대상사업은 공주시와 부여군은 대백제전을 대비한 백제문화 선양 및 관광지 개발,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은 서해안 관광개발 및 지역특산품 발굴 육성, 논산시는 기호유교문화 및 관광개발, 백제문화개발, 금산군은 인삼·약초특화사업, 청양군은 청정지역 관광개발 및 지역특산품 발굴 육성 등을 선정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충청남도는 조례에 규정된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2월 공주·보령·논산 등 3개 시에 각각 60억원, 금산군·서천군·부여군·태안군 등 4개 군에 각각 80억원, 청양군에 84억원 등 모두 584억원을 우선 지원하였다.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가능한 ‘국가균특지원 대상사업’과 국가균특지원 없이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도비지원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충청남도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였다.

개발계획에서는 2008-2012년(5년간)간 8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분야 48개의 성장동력사업에 4천 792억원(국비 1천 452억원, 도비 1천 452억원, 시군비 1천 357억원, 민자 531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분야 21개사업, 3천373억원, 기반시설 확충분야 9개사업 421억원, 지역특화분야 12개 사업 860억원, 생산유통분야 6개사업 138억원 등을 투자키로 하였고, 이중 도비지원 대상사업은 16개 사업에 685억원을 투자키로 계획하였다.

<표 4>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현황(도·시 지원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	사업명	소요사업비
계		68,542
공주시	-	-
논산시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기호유교문화권개발(돈암서원, 고정지구)	5,625 3,750
금산군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인삼·약초비지니스타운 기반조성 금산인삼산업 자조협력 시스템 구축 인삼시장 개척을 위한 안테나숍 설치	7,000 7,000 6,994 1,375 600
부여군	백제호-백제역사재현단지 연결도로 개설	8,000
서천군	장항도선장 해상기반 시설 확충 서천읍 문화관광복합지구 조성 장항선 폐선부지 매입 및 선로변 경관 조성	1,610 3,000 8,000
청양군	까치내 휴양관광지 조성 특산 원예작물 공공육묘장 설치	3,400 1,550
태안군	안면 우회도로 개설 황도교 가설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정비	5,000 5,638 4,000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균형발전개발계획, 2008.

5. 성과 및 문제점

지역간 불균형 문제나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논할 때 항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를 그 중심에 두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과밀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이 공존하듯이, 비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역간 균형발전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같이 단층구조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좀 더 세분하여 낙후정도에 따른 다층적인 구조로 파악하고 해결방안 또는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충북과 충남 역시 인구, 산업, 재정 등의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발전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북과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노력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충북과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모든 자치단체로 확산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방법상에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낙후지역의 공간범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시·군행정단위로 낙후도 측정을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로를 제외하면 읍면 또는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낙후지역과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둘째, 균형발전사업은 충북의 경우 하드(hard) 및 소프트(soft)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충남은 상당수가 시설중심의 하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자립적 역량강화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상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선도 및 시범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를 유인하는 특성보다는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상사업은 충북의 경우 지역혁신위원회, 충남의 경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시군 집행부와 위원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다섯째, 선정사업은 대부분 시·군에서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시·군이 매칭펀드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곱째,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5년 후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

차는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균형발전사업만으로 지역간 균형을 이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V.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1.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목표 명확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가 낙후지역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적 낙후도를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따라서, 균형발전정책의 목적은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목표와 추진전략을 명확히 하고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정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 낙후지역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설정

시군단위의 낙후지역 선정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충북과 충남에서는 인구, 산업, 소득 등의 지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표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정의로부터 점차 구체화된 정교한 지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에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변동을 염두에 둔 새로운 지표와 낙후지역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제반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낙후지역으로의 인구유입, 고령화 등 인구특성의 변화, 의료·교육·정보화 등 정주환경의 개선, 산업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지표개발이 긴요한 실정이다.¹¹⁾

3. 대상지역 공간단위의 유연화

충북과 충남에서 선정된 낙후지역의 공간적 단위는 시·군이지만, 실제 사업의 적용단위는 읍면 또는 마을단위라고 할 수 있다. 대상지역을 시·군단위로 선정하는 것은 통계자료 구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군 단위내에도 동·읍지역과 면지역간에는 발전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낙후지역 선정시 행정안전부의 오지개발, 소도읍사업과 같이 보다 미시적인 읍면을 공간단위로 하여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이 몇 개의 마을을 합한 단위나, 녹색농촌체험마을·농촌전통체험마을 등과 같은 마을 단위로 낙후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상역을 오지, 도시, 농촌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에 적합한 사

11) 안영진, 우리 나라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평가와 발전과제, 지리학연구, 제41권 4호, 2007, p. 428.

업을 선정 및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도 바람직하다.

4. 대상사업 선정방법 보완

충북·충남 모두 균형발전 대상사업은 국가종합계획, 도단위 종합개발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업을 수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는 시군 공모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업들이 시군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균형발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공모사업도 마을 또는 몇 개의 마을을 합한 규모의 단위에서 추진하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대상사업 유형의 다양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북의 경우 하드(hard) 및 소프트(soft)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충남은 상당수가 시설중심의 하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온 신활력사업과 같이 주민, 지자체, 외부의 역량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향식 핵심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 지역기반 및 지역산업 육성 등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브레인웨어사업도 물적사업 못지 않는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및 공동학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균형발전 제도 및 전담 조직체계 구축

충북과 충남은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운영중인 자치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¹²⁾

12)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2006.5.12), 제주도지역

또한, 충북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이든 충남도와 같이 과 단위 조직이든 자치단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연구전담조직 구성도 고려해볼만 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지역내에서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 자치단체의 제도적 장치와 전담조직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시·군 매칭펀드의 선택과 집중

충북과 충남은 낙후지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투자 계획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5년간 1,035억원, 충남의 경우 2천 8백억원(지방비)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경비의 대부분이 도 보통세 징수액의 5%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광역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지만, 시·군의 경우는 매칭펀드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군의 경우 물리적 시설 확충사업에는 투자를 지양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사업을 선택하여 집중투자하는 전략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공간 및 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정책도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논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부보다는 시장논리에 한발 더 다가가는 형태가 될 것을 명확해 보인다.

다시 말해 수도권내에서도 낙후지역은 존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도 낙후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에 분명하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7.20), 경상북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규정(2007.12.31) 등을 들 수 있음.

본 연구는 충북 및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에 시사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은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군행정단위의 낙후도 측정을 통한 대상지역 선정,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하드중심의 사업추진,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 성격, 사업의 정치적 결정, 시군의 매칭펀드 확보의 어려움, 사업시행에 따른 균형발전효과 한계 등의 문제를 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의 명확화, 낙후지역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설정, 대상지역 공간단위의 유연화, 대상사업 선정방법 보완, 대상사업 유형의 다양화, 균형발전 제도 및 전담조직 체계 구축, 시·군 매칭펀드의 선택과 집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의존하여 지역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존적 자세보다는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균형발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2004.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북개발전략 연구, 2005.
- 국토해양부,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경영, 업무보고 자료, 2008.3.24.
- 기획재정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 실천계획, 2008.3.10.
- 김동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재정, 재정포럼, 제136권,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은경,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경제연구, 제4집 제2호, 2007.
- 안영진, 우리 나라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평가와 발전과제, 지리학연구, 제41권 4호, 2007,
- 원광희, 균형발전정책 추진동향과 효율적 추진, 2008.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 그리고 나눔, 백서 1, 2008.
- 최병선, 새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 과제와 방향, 국토, 국토연구원, 2008.
- 충청남도, 충청남도 균형발전개발계획, 2008.
- 충청남도, 충청남도 균형발전기본계획, 2008.